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38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서지영·조정훈·박형수

서일준 • 이인선 • 김용태

이헌승 · 서천호 · 곽규택

박충권 · 김승수 · 이종배

고동진 · 김대식 · 조경태

김선교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, 그중 아동·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13세 미만 아동·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 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.

이에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의 13세 미만 아동 ·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7조, 제9조, 제10조 및 제2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03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13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: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- 2. 13세 이상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 죄를 범한자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②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13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: 7년 이상의 유기징역
- 2. 13세 이상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: 5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③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

한 자: 5년 이상의 유기징역

2. 13세 이상의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: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"를 "13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"로, "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"를 "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13세 이상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 - 2. 제7조제2항·제5항, 제9조 및 제10조의 죄
 -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2항, 제8조, 제9 조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

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 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 · 강제추행 등)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·청소년을 강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.

· 강제추행 등) ① 아동·청소 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 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.

- 1.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: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
- 2.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- ② 아동・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처벌한다.
- 1.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<u>하여 「형법」 제297</u>조의2 의 죄를 범한 자: 7년 이상의 유기징역
- 2. 13세 이상의 아동 · 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7조의2

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 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.

- 1. 구강・항문 등 신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
- 2.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 체(성기는 제외한다)의 일부

나 도구를 넣는 행위

③ 아동・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9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제7조 제9조(강간 등 상해·치상) ① 13 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 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 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<신 설>

- 의 죄를 범한 자: 5년 이상의 유기징역
- ③ 아동・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처벌한다.
 - 1.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: 5년 이상의 유 기징역
 - 2. 13세 이상의 아동 · 청소년에 대하여 「형법」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: 2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 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가-----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②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 을 대상으로 제7조의 죄를 범 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 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

<신 설>

제10조(강간 등 살인·치사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- 제20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 | 제20조(공소시효에 관한 특례) ① · ② (생 략)
 -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 는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「군사법원 법」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 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9조 및 제10조의 죄
 -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2항, 제7조제2항ㆍ제5항, 제8조, 제 9조의 죄
 - ④ (생 략)

ネ	하	디	L
1 '	ı	- 1	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10조(강간 등 살인ㆍ치사) ①ㆍ
 -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-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7조제2항·제5항, 제9조 및 제10조의 죄
- 관한 특례법」 제6조제2항, 제8조, 제9조의 죄
 - ④ (현행과 같음)